

영등포구의회
제12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7. 3. 2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및 제출경과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발의일 : 2007년 3월 19일
- 회부일 : 2007년 3월 19일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3**주요내용**

- 가. 행정자치부 예규에 맞게 회계관직 중 기금운용관을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 주사로 변경함 (안 제5조제2항)
-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안 제6제1항)
- 다.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의 4)
- 라. 기금의 결산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4**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07. 2. 20 ~ 2007. 3. 14(22일 간)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되어 조례 일부를 반영 보완 하려는 것으로
- 안 제1조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

법」이 2002년 1월 26일 폐지된 관계로 이를 정리 삭제하고

안제 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과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객관성, 전문성, 이해의 조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안제 6조제4항은 의사정족수를 3분의 2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완화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안제 6조의3은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 10조는 기금의 결산 및 보고 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 기금 운용계획안,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재정통제가 확대될 것이며

이밖에 안제1조, 제2조, 안제7조는 본 개정조례에 의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제명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띄어쓰기를 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위하여 법령제명 인용에 낫표를 표시하였습니다.

○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제5조제4항의 “은행법”에는 조문의 명확성을 위하여 법령 제명 인용에 낫표를 표시하고

안 제6조제1항제6호 “개정안”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예치금 및 예비비 지출” 로 “신·구조문 대조표”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예치금 및 예비비” 로 서로 상이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예치금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4항은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조정하고

안 제6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금운용의 계획의 입법례는 2001년 1월 제정된 “우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와 2001년 9월 제정된 “우리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2001년 11월 제정된 “우리구 체육진흥기금 조례”에 규정되고 2004년 3월 제정된 “우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에 일부 조정되어 규정되어 있으나 2005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우리구 재정 운영 조례” 제21조에도 관련 규정이 조정되어 입법되어 있어 삭제 의견이며

안 제6조의4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안제10조와 일부 중복되고 일부 내용이 우리구 “재정운영조례” 제20조에 입법되어 있어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안 제10조에 조정하여 신설하고

안 제6조의4제3항은 “우리구 재정운영 조례” 제22조에 입법되어 있어 삭제 의견이며

안 제10조는 2005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우리구 재정운영 조례” 제20조 관련 규정이 입법되어

있어 안 제6조의4제2항을 통합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분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 수정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3. 26

보고자 : 김 완 섭

붙임 : 1. 수정의견대비표
2. 관련법령

<p>6.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7. (생략)</p>	<p>6.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p> <p>7. (현행과 같음)</p>	<p>6. (개정안과 같음)</p> <p>7. (개정안과 같음)</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생략)</p> <p>②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p> <p>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p> <p>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 ----- ----- 기업지원담당주사 -----.</p> <p>③ 「지방재정법」 ----- ----- 기금운용관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 「은행법」 ----- -----.</p> <p>⑤ (개정안과 같음)</p>
<p>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생략)</p> <p>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p> <p>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p>	<p>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p> <p>①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3. (개정안과 같음)</p> <p>4.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 <신 설> <신 설></p> <p>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국장 및 담당 상임위 구의원, 수탁금융기관의 장, 구청장이 위촉하는 관련 단체나 기관의 인사로 한다.</p> <p>③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주사가 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5. <u>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u></p> <p>6. <u>기금운용계획의 예치금 및 예비비</u></p> <p>7.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8인 이하 ----- ----- 재정경제국장 ----- ----- 지역경제과장 ----- ----- 관련과장 ----- <u>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u> 구청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③----- 간사를 두되, 기업지원담당주사가 된다.</p> <p>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5. (개정안과 같음)</p> <p>6. <u>예치금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u></p> <p>7.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p> <p>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6조의3(회의 및 수당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6조의3(회의 및 수당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6조의4(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조의4(기금의 운용계획) ① ~ ③ <삭 제> 안 제10조에 일부 조정</p>
<p>제7조(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 ①기금의 용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p>	<p>제7조(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 ① ----- ----- “「중소기업기본법」” -----</p>	<p>제7조(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 ① (개정안과 같음)</p>

<p>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② ~ ③ (생략)</p>	<p>----- ----- ② (현행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10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1조(시행규칙) ----- -----.</p>	<p>제11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p>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994·3·16>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4·3·16>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3·16>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결과를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